



2014. 10

기업의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을 위한 임원 자격제한 규정 도입 방안

- 비리기업인의 유죄판결 후 이사등재 현황 -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김기식

Contents

2014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Ⅱ
기업의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을 위한 임원 자격제한 규정 도입 방안
- 비리기업인의 유죄판결 후 이사등재 현황

목 차

〈인사말〉	v
I. 서 론	1
II. 분석대상 및 방법	3
III. 비리기업인의 유죄판결 전후 계열사 임원 현황 분석	7
1. 총수일가의 유죄판결 전후 계열사 임원 변동 현황	7
2. 전문경영인의 유죄판결 전후 계열사 임원 변동 현황	13
3. 총수일가와 전문경영인의 비교	18
IV. 현행 법령상 임원의 자격제한 규정 및 그 문제점	21
1. 유죄가 선고된 임원에 대한 자격제한 규정	21
2. 현행 임원 자격제한 규정의 문제점	24
V.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을 위한 개선방안	29
1. 임원의 자격제한에 관한 일반규정 신설	29
2. 임원의 형사사건 관련 공시의 강화	35
별첨. 주요그룹 총수일가 및 전문경영인의 형사재판 결과와 임원변동 현황	40



회사의 경영진이 횡령·배임으로 재판을 받는 경우, 지금까지는 ‘이번에도 솜방망이 처벌을 받을 것인가’, 즉, 선고되는 형이 실행인지 집행유예인지, 혹은 형량이 적정한지가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횡령·배임은 주주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횡령·배임으로 형을 선고받은 경영진이 또 다시 경영 활동에 나서는 것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경우에 따라 견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회사와 관련된 범죄로 재판을 받는 것 자체가 이미 주주이익과 기업가치를 훼손한 것인데, 이사회에 참석할 수 없는 구속 상태에서도 평상시와 동일한 급여를 받는 등 일부 경영진이 보여준 행태는 단순한 도덕적 해이 수준을 넘어 주주의 이익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원 선임 절차에서 이러한 경영자들을 배제하거나 최소한 이들이 주주 이익을 침해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영자라는 사실을 주주들에게 적절히 공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기업 가치 및 주주이익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며, 나아가 엄정한 처벌 못지않게 경영진의 횡령·배임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이러한 방향성과 목적의식 아래,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총수 일가와 전문경영인을 중심으로 형사사건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임원의 임원직 변동 실태를 조사·분석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고민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고민의 결과물을 모아 정책자료집으로 펴 냅니다. 하반기 국회에서 제도 도입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국회정무위원회 간사
국회의원 김 기 식

I 서론

화이트칼라 범죄(white color crime)에 대한 분석은 주로 화이트칼라 범죄가 실정법의 테두리에서 적정한 형벌이 부과되고 있는지 여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반면 경영진들이 횡령·배임 등으로 형을 선고 받은 이후 어떠한 활동을 하는지는 관심이 없다.

현행 상법에서는 이사의 자격에 대해 특별한 규제를 하고 있지 않다.¹⁾ 이에 따라 과거 횡령·배임 등으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이 회사, 나아가 자신이 범죄를 저지른 해당 회사의 이사로 선임될 수 있다. 물론 이사의 선임은 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나, 비상장회사의 경우 대부분 지배주주가 지분을 거의 100% 보유하고 있고 상장회사 역시 지배주주가 상당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배주주를 위한 횡령·배임을 저지른 경영진이라 하더라도 주주총회에서 별다른 이의 없이 안건이 통과된다. 다만, 최근 SK그룹의 최태원 회장과 한화그룹의 김승연 회장의 경우 유죄 확정판결 이후 자신이 이사로 등재된 모든 계열사 임원에서 사임하였으나, 이는 불과 최근의 일이기 때문에 아직 일반적인 상황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한편, 일부 경영진의 경우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거나 하급심에서 법정구속된 경우에도 회사의 이사직을 내려놓지 않으며, 심지어 일상적인 경영활동을 하던 때와 동일한 급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의 형사재판이 대부분 회사와 관련된 것도 문제지만, 이사회에 참석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업무수행도 하지 못하는 이사에 대해 이러한 대우를 하는 것은 해당 회사의 주주로서는 용납하기 어려운 것이며, 시장에서도 해당 회사 내지 그룹을 지배구조의 심각한 위험요인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예컨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지침에 따르면 '기업가치의 훼손 내지 주주 권익의 침해 이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정하고 있으며(지침

1) 다만 사외이사의 경우 일정한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음.

제27조 제1항), 현행 지침에 반영되지는 않았으나 2012년 3월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는 법원의 1심 판결 이후부터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며, 주주가치 훼손행위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이 있는 경우 검찰이 기소한 시점부터 적용하도록 내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바 있다.²⁾

화이트칼라 범죄의 경우 총수일가를 포함한 경영진들이 회사 또는 그 계열사에서 횡령을 통한 비자금 조성이나 사익추구를 위한 배임이 문제가 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그동안 이들에게 관대한 사법부의 관행에 따라 ‘숨방망이 처벌’만을 받았고, 형사처벌에 따른 경영활동에 별다른 지장을 받지 않았다. 그 결과 경영진에 대한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범죄의 예방 내지 재발방지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들 비리기업인들의 경우 그룹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 유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고려할 때 일반적인 처벌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화이트칼라 범죄의 경우 실형이 선고되거나 또는 집행유예 선고라 하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 문제가 된 회사의 이사로 선임되지 못하도록 제도화 한다면 범죄예방 내지 재발방지에 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이에 본보고서는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영진들의 임원직 변동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지배구조상 위험을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는 법제도적 개선안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2) 보건복지부 (2012.3.21) 보도자료, “국민연금, 상법 개정안에 따른 정관변경에 대해 주주가치를 지키는 방향으로 의결권 행사” 참조.

II 분석대상 및 방법

분석대상은 2004.10.1.부터 2014.9.30.까지 10년 동안 선고가 내려진 사건 중에서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공시된 기업집단의 총수일가 및 전문경영인이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금고 이상의 최종 형을 선고 받은 경우로 한정하였다.

본 보고서의 분석이 총수일가의 형사사건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으므로³⁾ 최근 10년 동안 한차례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 중 동일인이 자연인이 아닌 기업집단인 KT그룹, 포스코그룹, 쌍용양회그룹 등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고, 2004년 10월 이전에 최종심이 내려진 사건도 일부 있으나 공범의 최종 형사사건이 본 보고서의 대상범위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 동일한 사건으로 보아 분석대상에 포함시켰다. 또한, 분석대상 형사처분을 ‘금고 이상의 형’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최종선고에서 벌금형이 확정된 한화그룹 김종석·최형철·김영수, OCI 그룹 이우정, 효성그룹 조현상, 현대산업개발그룹 정몽규 등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분석대상 기간 중에도 총수일가 및 전문경영인의 회사 및 그룹 내 직책은 자주 변동되었으므로 서술의 편의상 모두 생략한다.

이에 본 보고서의 분석대상이 된 대규모기업집단은 삼성그룹(동일인 이건희), 현대자동차그룹(동일인 정몽구), SK그룹(동일인 최태원), 한화그룹(동일인 김승연), 두산그룹(동일인 박용곤), 동부그룹(동일인 김준기), 부영그룹(동일인 이종근), OCI그룹(동일인 이수영), 효성그룹(동일인 조석래), 동국제강그룹(동일인 장세주), 한라그룹(동일인 정몽원), 태광그룹(동일인 이호진), 한솔그룹(동일인 이인희), 애경그룹(동일인 장영신, 2008년 기준), 오리온그룹(동일인 담철곤, 2008년 기준), 씨앤그룹(동일인 임병석, 2008년 기준) 등 16개 그룹이며, 각 그룹의 총수일가 및 전문경영인이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최종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을 그 분석대상으로

3) 총수일가의 형사사건을 중심으로 다루기 때문에 총수일가가 연관되지 않는 전문경영인의 형사사건은 분석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하였다.

분석대상 형사사건에서 최종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총수일가 및 전문경영인은 아래 <표 1>과 같이 75명인데,⁴⁾ 최종 유죄를 선고 받은 이들 총수일가 및 전문경영인들에 대해 최종 선고를 전후하여 해당 그룹의 계열사 임원(이사 및 감사) 등재 여부를 확인하였다.

그룹 계열사의 임원등재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규모기업집단 정보공개시스템(OPNI, <http://groupopni.ftc.go.kr/>)에서 매년 공개하는 ‘소속회사 임원현황’을 중심으로 파악하였으며, 보다 정확한 임원현황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http://dart.fss.or.kr/>)에 공시된 해당 회사의 사업보고서를 통해 확인하였다.⁵⁾

<표 1> 분석대상 총수일가 및 전문경영인

	그룹	성명	최종심	선고일	형량
1	삼성	이건희(총수)	파기환송심	2009.8.14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2	삼성	이학수	파기환송심	2009.8.14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5년
3	삼성	김인주	파기환송심	2009.8.14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4	삼성	김홍기	파기환송심	2009.8.14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
5	삼성	박주원	파기환송심	2009.8.14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
6	삼성	최광해	3심	2009.5.29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
7	현대차	정몽구(총수)	파기환송심	2008.6.3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8	현대차	김동진	파기환송심	2008.6.3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
9	현대차	이정대	1심	2007.2.5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
10	현대차	김승년	1심	2007.2.5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
11	현대차	이주은	1심	2007.2.9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
12	SK	최태원(총수)	3심	2008.5.29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13	SK	손길승	2심	2005.6.10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14	SK	김창근	3심	2008.5.29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15	SK	유승렬	2심	2005.6.10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
16	SK	김승정	2심	2005.6.10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4) SK그룹 최태원과 한화그룹 김승연은 각기 다른 두 건의 형사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본 분석은 형사사건을 대상으로 하므로 각각 두 건으로 보았다. 편의상 선고일자 기준으로 1, 2로 구분하였다.

5)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기업에 한한다.

	그룹	성명	최종심	선고일	형량
17	SK	박주철	3심	2008.5.29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18	SK	윤석경	3심	2008.5.29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
19	SK	조기행	3심	2008.5.29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0	SK	문덕규	3심	2008.5.29	징역2년, 집행유예3년
21	SK	민충식	3심	2008.5.29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
22	SK	최태원2(총수)	3심	2014.2.27	징역 4년
23	SK	최재원(총수일가)	3심	2014.2.27	징역 3년6월
24	SK	장진원	3심	2014.2.27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
25	한화	김승연1(총수)	2심	2007.9.11	징역 1년6월, 집행유예3년(폭행사건)
26	한화	김승연2(총수)	파기환송심	2014.2.11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27	한화	홍동욱	파기환송심	2014.2.11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28	한화	어성철	파기환송심	2014.2.11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
29	한화	김현중	3심	2013.9.26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
30	한화	김관수	3심	2013.9.26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
31	한화	이성규	3심	2013.9.26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
32	한화	허원준	파기환송심	2013.9.26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33	한화	김우석	3심	2013.9.26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
34	한화	유영인	3심	2013.9.26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35	한화	김경한	3심	2013.9.26	징역 10월
36	한화	금기만	3심	2013.9.26	징역 8월
37	두산	박용성(총수일가)	2심	2006.7.21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38	두산	박용오(총수일가)	3심	2007.2.22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39	두산	박용만(총수)	2심	2006.7.21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40	두산	박용욱(총수일가)	1심	2006.2.8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
41	두산	이재경	1심	2006.2.8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
42	두산	강문창	1심	2006.2.8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
43	두산	김홍구	1심	2006.2.8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
44	두산	경창호	1심	2006.2.8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
45	두산	이종범	1심	2006.2.8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
46	두산	김종무	1심	2006.2.8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
47	두산	김윤일	1심	2006.2.8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
48	두산	이성희	1심	2006.2.8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49	두산	김준덕	1심	2006.2.8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그룹	성명	최종심	선고일	형량
50	두산	송정호	1심	2006.2.8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51	동부	김준기(총수)	5심	2009.10.29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52	동부	백호익	5심	2009.10.29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53	동부	안상기	5심	2009.10.29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54	부영	이중근	파기환송심	2008.6.27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55	부영	이남형	파기환송심	2008.6.27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56	OCI	이우현(총수일가)	1심	2011.4.8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
57	효성	조현준(총수일가)	3심	2012.9.13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
58	동국제강	장세주(총수)	1심	2004.12.16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59	한라	정몽원(총수)	3심	2005.1.28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60	한라	장충구	3심	2005.1.28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
61	한라	문정식	3심	2005.1.28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
62	한라	박성석	3심	2002.10.4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
63	태광	이선애(총수일가)	2심	2012.12.20	징역 4년
64	태광	이성배	2심	2012.12.20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65	태광	박명석	2심	2012.12.20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66	태광	배두연	2심	2012.12.20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67	한솔	조동만	1심	2005.5.27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68	한솔	김근무	1심	2005.5.27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69	애경	채형석(총수일가)	1심	2009.4.23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
70	애경	장신호	1심	2009.4.23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71	애경	박홍순	1심	2009.4.23	징역 3년
72	오리온	담철곤(총수)	3심	2013.4.26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73	오리온	조경민	3심	2013.4.26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
74	오리온	김승열	3심	2013.4.26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75	씨앤	임병석(총수)	3심	2013.6.13	징역 5년

Ⅲ 비리기업인의 유죄판결 전후 계열사 임원 현황 분석

총수일가 및 전문경영인의 유죄판결 전후 계열사 임원변동은 최종심 선고 당시의 임원등재 현황과 최종심 선고 후 1년 동안의 임원등재 현황을 비교하였다. 선고 후 1년 동안의 임원등재 현황만을 비교대상으로 삼은 것은 형사재판의 결과에 따라 회사와 주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임여부를 결정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1년 이내로 판단했기 때문이며, 이번 분석의 기초 데이터는 공정위 공시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4월 1일 임원등재 현황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다만, 선고의 시기가 주주총회 전후 기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업보고서에 기재된 임원현황을 기준으로 정리하였다.

유죄판결 전부터 유죄선고의 효력이 미치는 기간 동안의 구체적인 임원변동 현황은 ‘별첨 주요그룹 총수일가 및 전문경영인의 형사재판 결과와 임원변동 현황’을 참조하기 바란다.

1. 총수일가의 유죄판결 전후 계열사 임원 변동 현황

분석대상 총수일가는 두산그룹의 박용욱⁶⁾과 최종심 선고 전후에 기업집단에서 제외되어 정확한 임원 등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부영그룹과 애정그룹을 제외한, 14개 그룹 19명(SK그룹 최태원, 한화그룹 김승연은 중복 산정)이다.

① 유죄선고 후에도 임원직을 유지한 사례

총수일가 중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선고 후에도 한 개 이상 계열회사의 등기이사직을 유지하거나, 이사로 새로 선임된 사례는 10개 그룹, 11명으로 확인되었다. 비율로 따지면 71.4%의 그룹, 57.9%의 총수일가가 유죄판결 후에도 별다른 제재 없

6) 두산그룹 박용욱의 경우 총수일가에 해당하나 두산그룹에서 근무했던 자가 아니므로 두산그룹의 등기이사 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 대상에서 제외함.

이 형사사건과 관련이 있었던 그룹의 계열사 이사로 활동한 것이다. 반면, 유죄가 선고된 이후 그룹 계열사 임원직을 맡지 않은 총수일가는 7개 그룹 8명 이었다(이 중 삼성그룹 이진희⁷⁾와 한솔그룹 조동만은 최종선고 전에 임원직을 사임하거나 임원을 맡지 않은 상태였음).

〈표 2〉 총수일가의 유죄 선고 후 계열사 임원직 유지 현황

	임원직 유지 (신규선임 포함)	임원직 사임 (최종심 전 사임 포함)	합계
총수일가 수	11명	8명	19명
해당임원	현대차 정몽구, SK 최태원 ¹⁾ , 한화 김승연 ¹⁾ , 두산 박용성, 박용만, 동부 김준기, OCI 이우현, 효성 조현준, 동국제강 장세주, 한라 정몽원, 태광 이선애	삼성 이진희, SK 최태원 ²⁾ , 최재원, 한화 김승연 ²⁾ , 두산 박용오, 한솔 조동만, 오리온 담철곤, 씨앤 임병석	
비율	57.9%	42.1%	100%

② 유죄선고 후 임원등재 회사 수가 감소한 사례

유죄가 선고된 19명의 총수일가 중 유죄선고 직후 계열사 임원등재 수에 변화가 있었던 경우는 11명이었다. 우선, 유죄판결 직후 임원등재 회사 수가 감소한 사례는, 현대차그룹 정몽구⁸⁾ (5개 회사에서 4개 회사), SK그룹 최태원⁹⁾ (4개 회사에서 0개 회사), 최재원 (3개 회사에서 0개 회사), 한화그룹 김승연¹⁾ (7개 회사에서 3개 회사) 및 김승연²⁾ (7개 회사에서 0개 회사), 두산그룹 박용오 (1개 회사에서 0개

7) 삼성그룹 이진희의 경우 삼성특검재판이 시작되기 전 삼성전자 대표이사 회장직에서 사임하였기 때문에 최종 선고 시는 물론이고 선고 후에도 이사로 등재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진희는 2009.12.31. 기업인으로는 유례없는 원 포인트 사면을 받았고, 3개월 후인 2010.4.24. 회장직을 사임한지 23개월 만에 삼성전자 회장(미등기임원)으로 경영에 복귀하였다.

8) 정몽구는 기아자동차의 이사를 2009.3 사임하였음.

9) 최태원은 2014.3월 4개 회사의 이사를 사임하였음.

회사), 효성그룹 조현준 (12개 회사에서 9개 회사), 오리온그룹 담철곤 (1개 회사에서 0개 회사) 등 8명이었다.

그러나, 두산그룹 박용오의 경우 ‘형제의 난’으로 두산그룹에서 축출되면서 두산산업개발의 이사를 사임하게 된 것이며, 한화그룹 김승연¹의 경우 각 회사의 소관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임원의 자격제한 규정에 따라 사임하게 된 것이다. 현대차그룹 정몽구의 경우 이사를 사임하였다고는 하나 현대자동차 그룹의 주요 회사인 현대자동차와 현대모비스의 이사는 여전히 유지하고 있으며, 오리온그룹 담철곤 역시 유죄선고 이후 오리온의 등기이사직을 사임하면서 미등기임원으로 변경하였으나, 자발적인 결정이었다기 보다 오리온이 최대주주로 있는 스포츠토도 사업과 관련하여 「국민체육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등에서 체육진흥투표권의 수탁사업자의 요건으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도덕성과 사회적 신용이 있을 것”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결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나마 과거에 비하여 최근 유죄판결을 받은 총수일가(SK그룹 최태원², 최재원, 한화그룹 김승연²의 경우 모든 등기이사에서 사임한 것은 물의를 일으킨 회사에 대해 책임을 다하는 모습으로 볼 수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③ 유죄선고 후 모든 임원직을 사임한 사례

올해 2월 최종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총수일가가 모든 그룹 계열사의 등기이사직에서 사임한 사례가 처음으로 확인되었다. 물론 두산그룹 박용오, 오리온 담철곤과 같이 한 개 회사의 등기이사직을 사임하거나, 미등기임원으로 전환하여 외형적으로 그룹의 전면에서 사라진 사례는 과거에도 더러 있었지만, 복수 등기이사직에서 모두 사임한 사례는 최근의 일이다.

SK그룹 최태원은 최종 선고에서 징역 4년이 확정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자신이 대표이사 내지 이사로 있던 (주)SK, SK C&C, SK이노베이션, SK하이닉스

등에서 모두 사임하였고, 함께 처벌을 받은 최재원은 SK네트웍스, SK E&S, SK플래닛 등기이사에서 모두 사임하였다. 이들은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6개월 형을 선고 받아 수감 중인 상태였기 때문에 이사로서의 기본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당연한 결정이었으나,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태원과 최재원이 마지막까지 등기이사직 사임을 두고 심각하게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그룹 김승연의 경우에도 올해 2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형이 최종 확정되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이 이사로 있던 (주)한화, 한화케미칼, 한화테크엠, 한화갤러리아, 한화건설, 한화엘앤씨, 한화이글스 등 7개 상장 및 비상장 회사의 모든 대표이사 및 이사직에서 사임하였다. 김승연의 경우 2007년 형사재판에서 최종 유죄가 선고되자 각 계열사의 소관법령에 따라 이사자격에 문제가 발생하는 회사의 이사직만을 사임한 이력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해당 회사는 물론이고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이사직까지 모두 사임하였다.

④ 유죄선고 후 등재 회사 수가 증가한 사례

유죄판결 직후 임원등재 회사 수가 증가한 사례는, 두산그룹 박용만 (2개 회사에서 3개회사), 동부그룹 김준기 (2개 회사에서 4개 회사), 한라그룹 정몽원 (0개 회사에서 1개 회사) 등 3건이었다. 유죄선고 후 계열사 임원등재의 수를 줄이기보다 오히려 늘린 총수일가의 경우 회사와 주주의 가치훼손에 대하여 책임지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어 특히 문제다. 전체대상 총수일가 대비 이들의 비율은 15.8% 이지만, 국민들의 법감정을 고려해 볼 때 납득하기 어려운 정도로 높은 수준이다.

〈표 3〉 총수일가의 유죄 선고 후 계열사 임원변동 요약

	임원 등재 회사수 감소		임원 등재 회사수 증가
	등재 회사수 감소	모든 임원직 사임	
총수일가 수 (전체 11명)	8명	(5명)	3명
해당임원	현대차 정몽구, SK 최태원2, 최재원, 한화 김승연1, 김승연2, 두산 박용오, 효성 조현준, 오리온 담철곤	SK 최태원2, 최재원, 한화 김승연2, 두산 박용오, 오리온 담철곤	두산 박용만, 동부 김준기, 한라 정몽원

⑤ 정리

총수일가의 경우 기본적으로 법원의 유죄판단 여부가 그룹 계열사의 임원직 유지 내지 선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다만, 회사와 관련된 소관법률에 의해 임원자격에 문제가 되는 경우 이사직을 사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즉, 총수일가의 경우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자의적으로 계열사 임원직을 사임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불법행위로 인해 형을 선고 받은 자들이 이사직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제기가 커지면서 유죄선고 이후 총수일가들이 등재된 이사직을 사임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례는 최근 몇몇 사례에 불과할 뿐이므로 총수일가의 유죄선고와 임원직 사임의 관계에 변화가 있는지 여부는 향후 보다 많은 사례를 축적한 후에나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표 4〉 총수일가의 유죄판결 선고 전후 계열사 임원 변동 현황

그룹	성명	최종선고	선고형량	선고시 재직회사	선고 후 재직회사*	증감
삼성	이건희	2009.8.14	징역3년, 집유5년	-	-	-
현대차	정몽구	2008.6.3	징역3년, 집유5년	5개사: 현대차, 기아차, 현대제철, 현대모비스, 현대파워텍	4개사: 현대차, 현대제철, 현대모비스, 현대파워텍	△1개사
SK	최태원1	2008.5.29	징역3년, 집유5년	3개사: (주)SK, SK C&C, SK에너지	3개사: (주)SK, SK C&C, SK에너지	-
	최태원2	2014.2.27	징역4년	4개사: (주)SK, SK C&C, SK이노베이션, SK하이닉스	-	△4개사
	최재원	2014.2.27	징역3년6월	3개사: SK네트웍스, SK E&S, SK플래닛	-	△3개사
한화	김승연1	2007.9.11	징역1년6월, 집유3년	7개사: (주)한화, 한화테크엠, 한화갤러리아, 한화건설, 한화종합화학, 한화이글스, 드림파마	3개사: 한화갤러리아, 한화이글스, 드림파마	△4개사
	김승연2	2014.2.11	징역3년, 집유5년	7개사: (주)한화, 한화케미칼, 한화테크엠, 한화갤러리아, 한화건설, 한화엘앤씨, 한화이글스	-	△7개사
두산	박용성	2006.7.21	징역3년, 집유5년	2개사: 두산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	2개사: 두산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	-
	박용오	2007.2.22	징역3년, 집유5년	1개사: 두산산업개발	-	△1개사
	박용만	2006.7.21	징역3년, 집유4년	2개사: 두산인프라코어, 두산중공업	3개사: 두산, 두산인프라코어, 두산중공업	1개사
동부	김준기	2009.10.29	징역3년, 집유4년	2개사: 동부제철, 동부씨엔아이	4개사: 동부제철, 동부씨엔아이, 동부인베스트먼트, 동부메탈	2개사
OCI	이우현	2011.4.8	징역1년6월, 집유2년	1개사: OCI	1개사: OCI	-
효성	조현준	2012.9.13	징역1년6월, 집유2년	12개사: 효성, 효성아이티엑스,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 효성캐피탈, 효성투자개발, 효성트랜스월드,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 갤럭시아코퍼레이션, 갤럭시아포토닉스, 노틸러스효성, 더클래스 효성, 아시아엘엔지허브	9개사: 효성,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 효성투자개발, 효성트랜스월드,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 갤럭시아코퍼레이션, 갤럭시아포토닉스, 노틸러스효성, 아시아엘엔지허브	△3개사
동국제강	장세주	2004.12.16	징역3년, 집유4년	3개사: 동국제강, 유니온스틸, 동국통운	3개사: 동국제강, 유니온스틸, 동국통운	-
한라	정몽원	2005.1.28	징역3년, 집유5년	1개사: 만도	1개사: 만도 (현 한라홀딩스)	1개사

그룹	성명	최종선고	선고형량	선고시 재직회사	선고 후 재직회사*	증감
태광	이선애	2012.12.20	징역4년	1개사: 태광관광개발	1개사: 태광관광개발	-
한솔	조동만	2005.5.27	징역3년, 집유4년	-	-	-
오리온	담철곤	2013.4.26	징역3년, 집유5년	1개사: 오리온	-	△1개사
씨앤	임병석	2013.6.13	징역5년	-	-	-

* '선고 후 재직회사'는 최종 선고 후 1년 동안의 임원등재 회사만을 대상으로 한 것임.
 ** 밑줄 표시는 임원 변동이 있었던 회사를 의미함.

2. 전문경영인의 유죄판결 전후 계열사 임원 변동 현황

전문경영인의 유죄판결 전후 계열사 임원 변동 현황의 분석방법은 앞의 총수일가의 경우와 동일하다. 최종심 선고 전후에 기업집단에서 제외되어 정확한 임원 등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부영그룹, 한라그룹, 애경그룹을 제외한, 9개 그룹 47명이다.

① 유죄선고 후에도 임원직을 유지한 사례

전문경영인 중 금고 이상의 유죄가 선고된 후에도 한 개 이상 계열회사의 등기 이사직을 유지하거나 이사로 새로 선임된 사례는 6개 그룹 15명이었다. 비율로 따지면 66.7%의 그룹, 31.9%의 전문경영인이 유죄판결 후에도 형사사건과 관련이 있었던 그룹의 계열사 임원으로 계속 활동한 것이다. 이들 전문경영인은 모두 총수일가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유죄를 선고 받았기 때문에, 총수일가에 비해 그 직을 유지하는 비율은 낮지만, 30%가 넘는 전문경영인이 문제가 됐던 그룹 계열사의 임원직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감정상 받아들이기 어렵다.

〈표 5〉 전문경영인의 유죄 선고 후 계열사 임원직 유지 현황

	임원직 유지 (신규선임 포함)	임원직 사임 (최종심 전 사임 포함)	합계
전문경영인 수	15명 (4명)	32명 (24명)	47명
해당임원	현대차 김동진, 이정대, SK 김창근, 박주철, 윤석경, 조기행, 문덕규, 민충식 한화 유명인, 두산 이종범, 김종무, 김윤일, 송정호, 동부 안상기, 한솔 김근무	삼성 이학수, 김인주, 김흥기, 박주원, 최광해, 현대차 김승년, 이주은, SK 손길승, 유승렬, 김승정, 장진원, 한화 홍동욱, 어성철, 김현중, 김관수, 이성규, 허원준, 김우석, 김경한, 금기만, 두산 이재경, 강문창, 김홍구, 경창호, 이성희, 김준덕, 동부 백호익, 태광 이성배, 박명석, 배두연, 오리온 조경민, 김승열	
비율	31.9%	68.1%	100%

② 유죄선고 후 임원등재 회사 수가 감소한 사례

유죄가 선고된 47명의 전문경영인 중 유죄선고 직후 계열사 임원등재 수에 변화가 있었던 경우는 15명이었다. 유죄판결 직후 임원등재 회사 수가 감소한 사례는 한화그룹, 두산그룹, 태광그룹 등 3개 그룹에서 확인되었는데, 한화그룹 김현중 (1개 회사에서 0개 회사), 두산그룹 이재경·강문창·이성희 (각 1개 회사에서 0개 회사), 경창호·김준덕 (각 2개 회사에서 0개 회사), 김홍구 (3개 회사에서 0개 회사), 송정호¹⁰⁾ (2개 회사에서 1개 회사), 태광그룹 이성배(1개 회사에서 0개 회사) 등이 유죄가 선고된 직후 임원등재 회사 수에 감소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10) 두산그룹 송정호의 경우 현대알루미늄의 이사를 사임하면서 등재 이사수가 감소하였는데, 현대알루미늄의 경우 2005년 8월 두산산업개발이 지분일 매각하면서 계열사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사임한 것이다.

③ 유죄선고 후 모든 임원직을 사임한 사례

전문경영인 중 당초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유죄선고 후 해당 그룹 계열사의 어떠한 직책도 맡지 않게 된 사례는, 한화그룹 김현중(1개 회사에서 0개 회사), 두산그룹 이재경, 강문창, 이성희 (각 1개 회사에서 0개 회사), 경창호·김준덕 (각 2개 회사에서 0개 회사), 김홍구 (3개 회사에서 0개 회사), 태광그룹 이성배 (1개 회사에서 0개 회사) 등 총 3개 그룹 8명이다.

총수일가와는 달리 전문경영인의 경우 여러 회사에서 동시에 이사로 등재된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유죄선고 후 등재회사 수가 감소된 사례와 거의 유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분석대상 전문경영인의 절반에 해당하는 24명이 최종선고 전에 임원직을 사임하거나 어떤 직책도 맡지 않은 상태에서 유죄가 확정된 이후까지 그룹 계열사 내 아무런 직책도 맡지 않은 것을 감안할 때, 총수일가와는 달리 몇몇의 계열사 임원으로 재직하던 전문경영인의 모든 등기이사직 사임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한편, 두산그룹 이재경의 경우 네오플렉스의 감사로 재직하였고 형선고 이후 사임한 것으로 확인되나, 이후 2009년 두산의 대표이사와 두산건설, 두산인프라코어, 두산중공업의 사내이사로 선임되었으며 현재는 두산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두산그룹 이성희 역시 두산메카텍의 이사로 재직하다 형선고 이후 사임하였으나, 일 년 후 다시 두산중공업의 이사로 선임되었고, 이후 두산엔진의 대표이사로 활동하기도 하였다.

④ 유죄선고 후 임원등재 회사 수가 증가한 사례

유죄판결 직후 임원등재 회사 수가 증가한 사례는, SK그룹 박주철 (1개 회사에서 2개 회사), 문덕규 (0개 회사에서 1개 회사), 두산그룹 이종범·김종무·김윤일 (각 0개 회사에서 1개 회사), 동부그룹 안상기 (2개 회사에서 3개 회사) 등 3개 그룹 6

명이었다. 유죄 선고된 전문경영인 중 선고 직후는 아니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그룹 계열사의 임원으로 재차 선임하여 친정체제를 강화하는 경우는 흔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유죄선고 직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치 없이 계속 임원직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다른 계열사의 임원으로 신규 선임되는 것은, 총수일가의 의중이 반영된, 보은(報恩) 성격이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표 6〉 전문경영인의 유죄 선고 후 계열사 임원변동 요약

	임원 등재 회사수 감소		임원 등재 회사수 증가
	등재 회사수 감소	모든 임원직 사임	
전문경영인 수 (전체 15명)	9명	(8명)	6명
해당임원	한화 김현중, 두산 이재경, 강문창, 이성희, 경창호, 김준덕, 김홍구, 송정호, 태광 이성배	한화 김현중, 두산 이재경, 강문창, 이성희, 경창호, 김준덕, 김홍구, 태광 이성배	SK 박주철, 문덕규, 두산 이종범, 김종무, 김윤일, 동부 안상기

⑤ 정리

전문경영인들의 이사 선임 및 승진은 거의 전적으로 총수일가에 달려 있다. 불법행위에 연루된 전문경영인이 형을 선고 받은 이후 이사직을 사임한 사례는 대부분 두산그룹에 한정된다. 그러나 두산그룹의 전문경영인 중 유죄 판정판결 이후 이사직을 사임한 7명 - 이재경, 강문창, 김홍구, 경창호, 이성희, 김준덕, 송정호 - 중 이재경은 현재 두산의 대표이사이고, 송정호는 두산건설의 대표이사이며, 이성희는 두산엔진의 대표이사(2008~2001)였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총수일가의 형사사건에 함께 연루된 전문경영인은 유죄가 선고된 직후 총수일가를 대신하여 책임지는 의미에서 그룹 계열사의 이사직을 내려놓지만, 총수일가에 충성한 전문경영인은 결국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얻는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표 7〉 전문경영인의 유죄판결 선고 전후 계열사 임원 변동 현황

그룹	성명	최종선고	선고형량	선고 전 재직회사	선고 후 재직회사*	증감
삼성	이학수	2009.8.14	징역2년6월, 집유5년	-	-	-
	김인주	2009.8.14	징역3년, 집유5년	-	-	-
	김흥기	2009.8.14	징역2년6월, 집유4년	-	-	-
	박주원	2009.8.14	징역2년6월, 집유4년	-	-	-
	최광해	2009.5.29	징역2년6월, 집유4년	-	-	-
현대차	김동진	2008.6.3	징역2년6월, 집유4년	2개사: 현대차, 현대파워텍	2개사: 현대모비스, 현대파워텍	-
	이정대	2007.2.5	징역2년6월, 집유3년	4개사: 글로비스, 오토에버시스템즈, 위아, 해비치리조트, 현대캐피탈	4개사: 글로비스, 오토에버시스템즈, 위아, 해비치리조트, 현대로템	-
	김승년	2007.2.5	징역2년6월, 집유3년	-	-	-
	이주은	2007.2.9	징역1년6월, 집유2년	-	-	-
SK	손길승	2005.6.10	징역3년, 집유5년	-	-	-
	김창근	2008.5.29	징역2년, 집유3년	1개사: SK케미칼	1개사: SK케미칼	-
	유승렬	2005.6.10	징역2년6월, 집유3년	-	-	-
	김승정	2005.6.10	징역3년, 집유4년	-	-	-
	박주철	2008.5.29	징역1년, 집유2년	1개사: SK디앤디	2개사: SK디앤디, 유비케어	1개사
	윤성경	2008.5.29	징역1년6월, 집유2년	1개사: SK C&C	1개사: SK건설	-
	조기행	2008.5.29	징역1년, 집유2년	1개사: SK네트웍스	1개사: SK네트웍스	-
	문덕규	2008.5.29	징역2년, 집유3년	-	1개사: 영남에너지서비스	1개사
	민총식	2008.5.29	징역2년6월, 집유3년	1개사: 충남에너지서비스	1개사: 전북에너지서비스	-
	장진원	2014.2.27	징역2년6월, 집유3년	-	-	-
한화	홍동욱	2014.2.11	징역3년, 집유5년	-	-	-
	여성철	2014.2.11	징역2년6월, 집유4년	-	-	-
	김현중	2013.9.26	징역2년6월, 집유4년	1개사: 한화건설	-	△1개사
	김관수	2013.9.26	징역2년6월, 집유4년	-	-	-
	이성규	2013.9.26	징역2년6월, 집유3년	-	-	-
	허원준	2013.9.26	징역1년6월, 집유3년	-	-	-
	김우석	2013.9.26	징역2년6월, 집유3년	-	-	-
	유영인	2013.9.26	징역6월, 집유2년	5개사: 한화케미칼, 한화케미칼오버시즈홀딩스, 한화엘앤씨, 한화갤러리아, 드림파마	5개사: 한화케미칼, 한화케미칼오버시즈홀딩스, 한화엘앤씨, 한화갤러리아, 드림파마	-
	김경한	2013.9.26	징역10월	-	-	-
	금기만	2013.9.26	징역8월	-	-	-

그룹	성명	최종선고	선고형량	선고 전 재직회사	선고 후 재직회사*	증감
두산	이재경	2006.2.8	징역2년6월, 집유4년	1개사: 네오플렉스	-	△1개사
	강문창	2006.2.8	징역2년6월, 집유4년	1개사: 두산중공업	-	△1개사
	김흥구	2006.2.8	징역2년6월, 집유3년	3개사: 두산산업개발, 오리콤, 두산베어스	-	△3개사
	경창호	2006.2.8	징역2년6월, 집유3년	2개사: 두산산업개발, 두산베어스	-	△2개사
	이종범	2006.2.8	징역2년6월, 집유3년	-	1개사: 동현엔지니어링	1개사
	김종무	2006.2.8	징역1년6월, 집유2년	-	1개사: 동현엔지니어링	1개사
	김윤일	2006.2.8	징역1년6월, 집유2년	-	1개사: 세계물류	1개사
	이성희	2006.2.8	징역8월, 집유2년	1개사: 두산메카닉	-	△1개사
	김준덕	2006.2.8	징역8월, 집유2년	2개사: 두산산업개발, 두산알루미늄	-	△2개사
동부	송정호	2006.2.8	징역8월, 집유2년	2개사: 두산알루미늄 새재개발	1개사: 새재개발	△1개사
	백호익	2009.10.29	징역2년, 집유3년	-	-	-
태광	안상기	2009.10.29	징역2년, 집유3년	2개사: 동부, 동부캐피탈	3개사: 동부, 동부캐피탈, 동부메탈	1개사
	이성배	2012.12.20	징역2년, 집유3년	1개사: 텔테크	-	△1개사
	박명석	2012.12.20	징역1년6월, 집유3년	-	-	-
한솔	배두연	2012.12.20	징역1년6월, 집유3년	-	-	-
	김근무	2005.5.27	징역2년, 집유3년	1개사: 한솔개발	1개사: 한솔개발	-
오리온	조경민	2013.4.26	징역2년6월, 집유4년	-	-	-
	김승열	2013.4.26	징역2년, 집유3년	-	-	-

* '선고 후 재직회사'는 최종 선고 후 1년 동안의 임원등재 회사만을 대상으로 한 것임.

** 밑줄 표시는 임원 변동이 있었던 회사를 의미함.

3. 총수일가와 전문경영인의 비교

총수일가와 전문경영인의 유죄선고에 따른 그룹 계열사 임원 등재 현황 비교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총수일가에 비해 전문경영인의 경우 최종 선고 이후에 모두 그룹 계열사에서 어떤 등기이사직도 맡지 않은 비율이 월등히 높았다는 점이다. 총수일가의 경우 정확한 임원등재 여부의 확인이 가능한 전체 19명 중 삼성그룹 이건희, 두산그룹 박용욱, 한솔그룹 조동만, 씨앤그룹 임병석 등 4명 (21.1%)이

여기에 해당된 반면, 전문경영인의 경우 전체 47명 중 삼성그룹 이학수, 김인주, 김흥기, 박주원, 최광해 (이상 5명), 현대차그룹 김승년, 이주은 (이상 2명), SK그룹 손길승, 유승렬, 김승정, 장진원 (이상 4명), 한화그룹 홍동욱, 어성철, 김관수, 이성규, 허원준, 김우석, 김경한, 금기만 (이상 8명), 동부그룹 백호익 (1명), 태광그룹 박명석, 배두연 (이상 2명), 오리온그룹 조정민, 김승열 (이상 2명) 등으로 총 24명 (51.1% 비율)이었다.

재벌총수일가가 연루된 형사사건에서 총수일가의 경우 시장과 주주들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형사재판의 ‘무죄추정의 원칙’을 빌미로 최종심 선고 때까지 별다른 거취 표명을 하지 않는 반면, 전문경영인의 경우 그룹 계열사 임원직을 유지하는 것이 회사와 그룹에 부담으로 작용할 경우 손쉽게 그 직에서 해임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 외에도 재벌총수일가와 전문경영인은 형사사건의 결과에 따라 계열사 임원직 유지에 있어 많은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래 <표6>은 그룹별 총수일가와 전문경영인의 선고 후 계열사 임원재직 현황을 비교한 것인데, 총수일가의 경우 선고 후 평균 1.2개의 계열사 임원직을 사임한 반면, 전문경영인은 평균 0.12개 회사의 임원직만을 사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일가의 이사직 사임이 월등히 높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최종심 전에 사임하지 않고 최종심 후에 거취를 결정한다는 점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며, 특히 본 분석에서 SK그룹 최태원, 최재원, 한화그룹 김승연의 올해 초 유죄판결에 따라 총 14개 회사의 임원직에서 일괄 사임한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 총수일가의 경우 올해 초 선고된 건을 제외할 경우 선고 후 사임은 4건 (평균 0.27개사)으로 크게 줄어들어 전문경영인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표 8〉 그룹별 총수일가와 전문경영인의 선고 후 계열사 임원 등재 현황 비교

(단위, 명, 개사)

그룹	총수일가				전문경영인			
	인원	선고전 회사	선고후 회사	증감	인원	선고전 회사	선고후 회사	증감
삼성	1	0	0	0	5	0	0	0
현대차	1	5	4	-1	4	6	6	0
SK	3	10	3	-7	10	5	7	2
한화	2	14	3	-11	10	6	5	-1
두산	3	5	5	0	10	12	5	-7
동부	1	2	4	2	2	2	3	1
태광	1	1	1	0	3	1	0	-1
한솔	1	0	0	0	1	1	1	0
오리온	1	1	0	-1	2	0	0	0
평균	15	38	20	-18	47	33	27	-6

* OCI, 효성, 동국제강은 전문경영인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비교 불가, 부영, 한라, 애경은 선고후 기업집단에서 제외되어 재직여부 확인 불가하여 제외함.

보다 중요한 문제는, 유죄가 선고된 임원의 경우 물의를 일으킨 그룹 계열사에 대해 책임을 지는 의미에서 최소한 일정 기간 경영일선에서 물러나는 것이 지배구조 차원에서 바람직 할 것으로 보이나, 실제 대다수 재벌그룹들은 사임하기는커녕 문제가 됐던 그룹 계열사 임원직을 계속 유지하여 오히려 그룹 경영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점이다.

이에 총수일가와 전문경영인의 유죄선고 후 계열사 임원 등재 비율을 비교한 결과, 총수일가의 경우 유죄판결에도 불구하고 임원직을 유지하는 비율이 무려 57.9%나 되었고, 전문경영인의 경우에도 31.9%로 총수일가에 비해서는 낮으나 상식 수준을 넘는 정도로 매우 높았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유죄가 선고된 이후 오히려 계열사 이사직을 더 확대한 경우인데, 전체 총수일가 19명 가운데 3명(15.8%), 총 47명의 전문경영인 가운데 6명(12.8%)가 여기에 해당되었다. 형사처벌 이후 반성하기는커녕 그룹에 대한 총수일가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이러한 경향은 그룹 지배구조의 심각한 위험요인으로 볼 수 있다.

IV 현행 법령상 임원의 자격제한 규정 및 그 문제점

1. 유죄가 선고된 임원에 대한 자격제한 규정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현행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가법’) 제14조 제1항은 본법의 일부 규정을 위반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금융회사,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출연 또는 보조한 기관,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일정기간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¹¹⁾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의 범위는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데, i)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공범 또는 공범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배우자가 발행주식 또는 출자금의 5% 이상 출자한 기업체, ii)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공범이 현재 임직원으로 있거나 범죄행위 당시 임직원으로 있었던 기업체, iii) 범죄행위로 인하여 이득을 취한 기업체, iv) 범죄행위로 이득을 취한 제3자 또는 그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배우자가 발행주식 또는 출자금의 5% 이상 출자한 기업체, v) 범죄행위로 이득을 취한 제3자가 현재 임직원으로 있거나 범죄행위 당시 임직원으로 있었던 기업체, vi)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체가 출자한 기업체로서 발행주식 또는 출자금의 5% 이상 출자한 경우 등이 그 대상이다.¹²⁾

11) 특경가법 제14조(일정 기간의 취업제한 및 인가·허가 금지 등) ① 제3조, 제4조제2항(미수범을 포함한다), 제5조제4항 또는 제8조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금융회사등,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한 기관 및 그 출연(出捐)이나 보조를 받는 기관과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2.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
3. 징역형의 선고유예기간

12) 특경가법 시행령 제10조(취업제한대상인 기관 및 기업체의 범위)

②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서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체를 말한다.

1. 법 제3조·법 제4조제2항(미수범을 포함한다)·법 제5조제4항 또는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

(2) 은행법 등 금융관계법령

현행 「은행법」 등 금융관계법령에서도 유죄가 선고된 임원에 대한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데, 은행법의 경우 i)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 이내, ii) 은행법 등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5년 이내, iii)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 iv)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해임되거나 징계면직된 지 5년 이내, v) 금융위로부터 적기시정조치 등을 받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했던 자로 적기시정조치일로부터 2년 이내, vi) 은행법 등에 따라 영업의 허가인가 등이 취소된 회사의 임직원이었던 자가 취소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은행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¹³⁾

죄판결을 받은 자의 공범(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 대하여 법 제6조의 죄를 범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나 공범의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배우자가 출자한 기업체로서 그 출자한 금액의 합계액이 발행주식 또는 출자금의 총액의 100분의 5 이상인 기업체

2. 법 제3조·법 제4조제2항(미수범을 포함한다) 법 제5조제4항 또는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공범이 그 범행 당시 임원 또는 과장급이상의 간부직원으로 있었거나 임원 또는 과장급이상의 간부직원으로 있는 기업체
 3. 법 제3조·법 제4조제2항(미수범을 포함한다)·법 제5조제4항 또는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죄판결된 범죄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기업체
 4. 법 제3조·법 제5조제4항 및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제3자 또는 그 제3자의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배우자가 출자한 기업체로서 그 출자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1호에 규정된 기준이상인 기업체
 5.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제3자가 범죄행위 당시 임원 또는 과장급이상의 간부직원으로 있었거나 임원 또는 과장급이상의 간부직원으로 있는 기업체
 6. 제1호 내지 제5호의 1의 기업체가 출자한 기업체로서 그 출자한 금액이 제1호에 규정된 기준이상인 기업체
- 13) 은행법 제18조(임원의 자격 요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은행의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될 수 없으며, 임원이 된 후에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임원의 직(職)을 잃는다.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 또는 외국의 은행 법령,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이에 상응하는 외국의 금융 관련 법령을 포함한다)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금융지주회사법」, 「보험업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상호저축은행법」도 은행법과 유사한 수준의 임원 자격요건을 정하고 있다.

(3) 규제산업법령

현행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이하 ‘총포법」), 「건설산업기본법」, 「통신사업법」 등 규제산업에 관한 법령에는 각각 형사처벌을 받은 자에 대한 허가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해당 규정이 임원 개개인에 대한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지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자’ 또는 ‘해당 법령을 위반한 자’가 이사로 있는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한 관허업을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임원자격 제한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 온다.

예컨대, 총포법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지 3년 이내인 사람,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1년 이내인 사람,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법률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이 법, 「한국은행법」,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또는 외국의 금융 관련 법령에 따라 해임되거나 징계면직된 자로서 해임 되거나 징계면직 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적기시정조치를 받거나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계약이전(契約移轉)의 결정 등 행정처분(이하 "적기시정조치등"이라 한다)을 받은 금융기관(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임직원으로서 재직 중이거나 재직 하였던 자(그 적기시정조치 등을 받게 된 원인에 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만 해당한다)로서 그 적기시정조치 등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이 법 또는 외국의 은행 법령,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이에 상응하는 외국의 금융 관련 법령을 포함한다)에 따라 영업의 허가·인가 등이 취소된 법인 또는 회사의 임직원이었던 자(그 취소 사유의 발생에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만 해당한다)로서 그 법인 또는 회사에 대한 취소가 있었던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에 따라 재임 중이었거나 재직 중이었다면 해임 요구(해임 권고를 포함한다) 또는 면직 요구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으로서 그 통보가 있는 날부터 5년(통보가 있는 날부터 5년이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자

및 명령을 위반하여 허가처분취소를 받고 3년 이내인 사람 및 임원중에 이러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제조업 허가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다.¹⁴⁾ 자연인에 대한 규제는 물론이고 해당 기업체에 이러한 결격사유가 있는 임원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허가를 제한함으로써 사실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자가 해당 기업체의 임원으로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2. 현행 임원 자격제한 규정의 문제점

현행 법령상 유죄가 선고된 임원의 자격을 제한하는 일반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나, 재벌범죄에 주로 적용되는 특경가법에서 동법의 일부 규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범죄와 관련된 기업체에 임직원으로 취업하는 것을 금하고 있으며, 그 외에 금융관계법령, 규제산업 법령 등에서 임원의 자격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져 오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현행 임원자격의 제한을 규정한 법률규정 가운데 일반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특경가법에 의한 취업제한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오히려 금융관계법령 및 규제산업 법령에 따라 해당 기업체에 취업이 제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예컨대, 한화그룹 김승연은 2007년 차남 폭행사건에 대한 보복 폭행의 건으로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았는데, 확정판결 후 (주)한화 대표이사, 한화테

14) 총포법 제5조(제조업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총격기·석궁제조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심신상실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콜의 중독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정신장애인
4. 20세 미만인 사람·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5.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6.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 처분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임원중에 제1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크엠 대표이사, 한화건설 대표이사, 한화종합화학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한 반면, 한화갤러리아 대표이사, 한화이글스 이사, 드림파마 대표이사 직은 그대로 유지하는 결정을 한 바 있다.¹⁵⁾

경제개혁연대가 최근 10년간 대규모기업집단의 총수일가가 연루된 형사사건(공범이 있는 경우 공범의 최종심 기준)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¹⁶⁾ 특경가법상 취업제한 규정 위반으로 판단되는 사례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표9〉 참조). 법률 위반 가능성이 있는 사례는 삼성그룹, 현대차그룹, SK그룹, 한라그룹 등에서 확인되었는데, 이들 그룹의 경우 유죄가 선고된 이후에도 공범이 출자하거나 공범이 임원으로 있거나 있었던 기업체에 취업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였다.

문제가 된 대부분의 사례는 대부분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할 경우였는데, 현행 미등기임원에 대한 공시가 회사의 자율에 맡겨져 있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취업제한 위반과 관련된 법 위반 사례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표 9〉 최근 10년간 총수일가가 연루된 형사재판 결과에 따른 특경가법상 취업제한 위반사례

그룹	성명	최종심	최종심결과	취업제한 위반사항	비고
삼성	최OO	2009.05.29 (2심)	징역 2년6월 집유 4년	2009.6. 말 이건희 판결 확정 이후에도 삼성전자 보좌역 (미등기임원, 공범이 재직할 회사)	2010.8.15 사면
	정몽구	2008.06.03 (파기환송심)	징역 3년 집유 5년	2008.6. 말 현대차 대표이사, 현대파워텍 이사 (공범이 재직할 회사)	2008.8.15 사면
현대차	김OO	2008.06.03 (파기환송심)	징역 2년6월 집유 4년	2008.6. 말 현대차 대표이사, 현대파워텍 이사 (공범이 재직할 회사, 공범이 출자한 회사 및 그 회사가 출자한 회사)	2008.8.15 사면

15) 한화그룹 김승연은 올해 2월에도 비자금조성 및 부실계열사 부당지원 등의 건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고 7개 계열사의 이사직을 모두 사임하였는데, 이는 규제산업 법령에 따라 주요 계열사의 이사자격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여론을 의식한 결정이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반응이었다.

16) 경제개혁연대 (2014.5.20) 논평, “사문화된 특경가법상 취업제한 규정, 제도개선과 적극적인 법집행 필요” 참조

그룹	성명	최종심	최종심결과	취업제한 위반사항	비고
	이OO	2007.02.05 (1심)	징역 2년6월 집유 3년	2007.3-2008.06. 현대차 미등기 임원 (공범이 재직한 회사 및 공범이 출자한 회사)	2008.8.15 사면
	김OO	2007.02.05 (1심)	징역 2년6월 집유 3년	2007.3-2008.06. 현대차 미등기 임원 (공범이 재직한 회사 및 공범이 출자한 회사)	2008.8.15 사면
SK	최태원	2008.05.29 (3심)	징역 3년 집유 5년	2008.6.말 SK 대표이사, SK C&C 이사 (공범이 재직한 회사)	2008.8.15 사면
	윤OO	2008.05.29 (3심)	징역 1년6월 집유 2년	2008.6.말 SK C&C 대표이사 (공범이 재직 및 출자한 회사)	2008.8.15 사면
	조OO	2008.05.29 (3심)	징역 1년 집유 2년	2008.6.말 SK 미등기임원 (공범이 재직한 회사 및 공범이 출자한 회사가 출자한 회사)	2008.8.15 사면
한라	정몽원	2005.01.28 (3심)	징역 3년 집유 5년	2005.3.~2007.9. 한라건설 미등기임원 (2002.10.4 1심 확정된 공범 박OO이 재직한 회사)	2008.1.1 사면

* 출처 : 경제개혁연대 (2014.5.20) 논평 (일부 수정)

재벌총수일가가 연루된 형사사건이 끊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죄가 선고된 임원들에 대한 취업제한 규정의 적용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비리기업인에 대한 대통령의 잦은 특별사면과 특경가법상 취업제한규정 자체의 흠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기업인에게 관대한 특별사면에 대해 살펴보면, 최근 10년간 특별사면이 이루어진 사례 중 비리기업인이 포함된 경우는 모두 8번으로 대부분의 특별사면에서 기업인에 대한 사면·복권이 단행되었다.¹⁷⁾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 사면권 행사를 엄격히 하겠다는 자신의 공약에 따라 취임 후 현재까지 비리기업인에 대한 사면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그동안 이루어진

17) 2005년 석탄일 사면 31명, 2005년 광복절 사면 1명, 2006년 광복절 사면 17명, 2007년 2월 설 특별사면 51명, 2008년 신년사면 21명, 2008년 광복절 사면 74명, 2009년 이견희 특별사면 1명, 2010년 광복절 사면 18명 등

특별사면에서 대부분의 경우 기업인에 대한 최종 선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특별사면·복권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현대차그룹 정몽구의 경우 최종심 확정 후 사면까지 불과 2개월 13일 걸렸고, SK그룹 최태원도 2008년 유죄 판결판결에서 사면까지 불과 2개월 18일밖에 걸리지 않는 등 마치 짜 맞춘 듯 최종 선고와 사면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렇듯 비리기업인에 대한 선심성 사면이 일반화됨으로써, 그동안 재벌총수일가의 범죄에 대한 특경가법 위반 여부 자체를 따져볼 여지가 많지 않았다.

둘째, 특경가법상 취업제한 규정이 재벌범죄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문제점을 들 수 있다. 1983년 제정 당시부터 특경가법 제14조 제1항에서는 동법에서 정한 사기·공갈·횡령·배임·수재·재산국외도피 등의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5년, 형의 집행유예기간 종료 후 2년 또는 형의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가 ‘금융회사 등, 국가·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및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문제는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취업제한 규정의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의 범위가 주로 ‘공범’ 및 ‘범죄행위로 재산상 이득을 얻은 제3자’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어, 정작 본인이 출자한 기업체 또는 그 기업체를 이용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체 등에 대한 취업제한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 결과 재벌총수일가가 관련된 형사사건에 있어 그룹 계열사가 범죄에 이용된다 하더라도 해당 기업체는 취업제한 대상이 아니며, 심지어 회사에 상당한 손실을 끼치더라도 취업제한 대상이 아니게 되어 무용지물인 규정으로 전락하였다. 현행 특경가법상 취업제한 규정은 단지 공범이 해당 계열사 임직원으로 재직할 경우에만 해당 기업체에 총수일가의 취업이 제한될 뿐이다.

따라서, 규제 영역에 따라 실효성이 상이한 임원의 자격제한에 관한 규제의 격차를 해소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규제의 영역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각 법령에 산재되어 있는 임원의 자격제한 규정을 통일화하는 것보다 일반적으로 적용 가능한 규

정을 도입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모든 회사에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상법 회사편에 유죄를 선고받은 임원에 대한 일반적인 제한규정을 두거나, 자본시장법에 이와 비슷한 규정을 두어 상장회사만이라도 적용가능한 규제를 두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으나, 현재까지 상법 (회사편 상장회사특례규정 포함) 및 자본시장법에 이러한 규제를 두는 것에 대한 진지한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V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을 위한 개선방안

1. 임원의 자격제한에 관한 일반규정 신설

(1) 이사의 자격제한에 관한 영국 사례

이지수(2013)에 따르면,¹⁸⁾ 영국은 1986년 ‘이사의 자격제한에 관한 법률’(Company Directors Disqualification Act, 이하 ‘CDDA’)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한다. CDDA는 채무불이행 또는 이사의 불법행위 등이 있는 경우 정부가 법원에 자격제한을 요청하고, 법원은 이사의 자격제한 여부를 판단하여 사안별로 2년~15년까지 이사의 자격을 제한하는 판결을 내리는 제도인데, 매년 1,000명 이상의 이사가 동법에 따라 자격제한을 받고 있다. 이는 경영에 적합하지 않은 인물의 참여를 법원의 판단으로 배제시킴으로써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영국 정부는 자격이 제한된 이사에 대해서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으로써 누구든지 이를 쉽게 필요에 따라 찾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¹⁹⁾ Insolvency Service의 데이터베이스에서는 개인의 이름을 통한 검색뿐만 아니라 회사 이름을 통한 검색까지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격제한이 된 이사의 자격제한 기간, 자격제한 사유, 생년월일, 주소 등이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또한 The Insolvency Service register에는 최근 3개월간 파산한 회사 및 그와 관련된 인물들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 줌으로써 사용자들은 언제든지 누가 어떤 사유로 자격이 제한이 되었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8) 이지수 (2013), “이사 자격제한 제도에 관한 고찰 - 영국 Company Directors Disqualification Act를 중심으로”, 이슈&분석 2013-4호, 경제개혁연구소.

19) <https://www.gov.uk/search-the-register-of-disqualified-company-directors> 참조.

〈표 10〉 영국 CDDA의 집행 현황

년도	02~03	03~04	04~05	05~06	06~07	07~08	08~09	09~10
조사대상 이사 수	3,539	3,394	3,860	3,721	4,107	3,991	4,752	7,030
자격제한 이사 수	1,594	1,367	1,240	1,173	1,200	1,145	1,252	1,387
비율	45%	40%	32%	32%	29%	29%	26%	20%

* 자료: Association of Business Recovery Professionals(2011), Directors' Disqualification: Room for Improvement

물론 영국의 CDDA는 도산법의 특별법으로 제정된 것으로, 정부(Insolvency Service)가 부적절한 이사들을 파악하여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도산법원에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파산 또는 파산의 위험이 있는 회사의 이사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CDDA의 제정 목적이 특정인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거나 미달되는 이사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므로, 문제가 된 회사 입장에서는 범죄의 재발방지 기능이 있다.

나라별로 기업 환경과 법제도 시스템이 상이함을 감안할 때, 영국의 이사자격 제한에 관한 규정을 국내법에 그대로 도입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겠으나, 우리나라에서 재벌총수일가가 관련된 범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형사 사건에 연루되어 일정수준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범죄와 관련된 회사뿐만 아니라 모든 회사의 임원으로 선임되지 못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입법 정책적 관점에서 검토해 볼 만 하다.

(2) 상법에 임원의 자격제한 규정 도입

현재 특가법 위반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이 취업제한 등에 관한 제재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보다 현실적인 제재방안은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기업체의 임원을 맡을 수 없도록 임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것이

다.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 대하여 일정 범위에 속하는 기업체의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동일한 사례가 반복될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것으로, 회사와 주주가치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새정치민주연합 유승희 의원, 이종걸 의원,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각각 이사의 결격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유승희 의원 대표발의 상법 개정안(의안번호 1905151)은 파산 후 복권되지 않은 자, 특경가법·자본시장법·외감법 등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집행 중인 자 및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 이사로 선임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종걸 의원 대표발의 상법 개정안(의안번호 1905190)은 특경가법·통합도산법·자본시장법·외감법 등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집행 중인 자 및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자본시장법 또는 외감법 위반으로 금융위 또는 증선위의 해임권고 제재를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상장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또는 감사가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추가하였으며, 서기호 의원 대표발의 상법 개정안(의안번호 1906760)은 상장회사의 경우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에 대해서는 이사, 집행임원 또는 감사가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추가하고 있다. 이를 비교하면 다음 <표11>과 같다.

<표 11> 상법상 이사의 결격사유 법률개정안 비교

구분	유승희 의원안	이종걸 의원안	서기호 의원안
적용회사	상장 및 비상장회사	상장회사	상장회사
적용대상	이사, 사외이사	이사, 집행임원, 감사	이사, 집행임원, 감사
법률위반 유형	상법·특경가법·자본시장법·외감법 위반 금고이상 유죄	상법·특경가법·자본시장법·외감법 위반 금고이상 유죄	모든 범죄로 금고이상 유죄

구분	유승희 의원안	이종걸 의원안	서기호 의원안
냉각기간	특정 범죄로 금고이상 범죄로 형 집행 종료 및 면제 후 5년 내, (모든) 금고이상 범죄로 형집행중 및 집행유예 기간 중	특정 범죄로 금고이상 범죄로 형 집행 종료 및 면제 후 5년 내, (모든) 금고이상 범죄로 형 집행 중 및 집행유예 기간 중, 자본시장법·외감법 위반으로 해임권고 받은 후 5년 이내	모든 금고이상 형 집행 종료 및 면제 후 5년 내, 형 집행 중 및 집행유예 기간 중
개정안 내용	<p>제382조의5(이사 또는 사외이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될 수 없으며, 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된 후에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職)을 잃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이 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 집행 중인 사람 및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p>제542조의4(이사, 집행임원 또는 감사의 결격사유 특례) 상장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이사, 집행임원 또는 감사로 선임할 수 없으며, 이사, 집행임원 또는 감사로 선임된 후에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職)을 잃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 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집행 중인 사람 및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 	<p>제542조의4(이사, 집행임원 또는 감사의 결격사유특례) 상장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이사(사외이사를 포함한다), 집행임원 또는 감사(상근감사를 포함한다)로 선임할 수 없으며, 이사, 집행임원 또는 감사로 선임된 후에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職)을 잃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집행 중인 사람 및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구분	유승희 의원안	이종걸 의원안	서기호 의원안
		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의 제재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정하는 법률을 위반하여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현재 계류 중인 상법 개정안은 모두 이사가 회사와 관련된 범죄행위 또는 일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는 경우 형 집행 종료 또는 집행 면제 후 5년 이내 및 법령을 불문하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형 집행 중이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경우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유승희 의원안의 경우 상법·특경가법·자본시장법·외감법 등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범죄로 형을 선고 받았을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상장회사뿐만 아니라 비상장회사의 이사 및 사외이사로 선임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또한 모든 형태의 범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형 집행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경우 동일하게 취업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 경우 모든 주식회사의 이사 및 사외이사로서의 자격을 제한하기 때문에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이에 이종걸 의원안과 서기호 의원안의 경우 상장회사에 한하여 특정범죄 또는 모든 형태의 범죄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등에 대해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재벌범죄에서 주로 활용되는 비상장회사에 대해서는 규율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기본적으로 재벌범죄에서 주로 적용되는 특경가법상 횡령·배임죄의 경우 범죄와 관련된 기업체의 임원뿐만 아니라 직원으로 취업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으므로, 동 규정에 대한 집행력을 높인다면 상당수 유죄선고된 기업인에 대한 기업체에 취업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특경가법상 취업제한 규정이 ‘공범’과 ‘범죄로 인하여 이득을 얻은 자’와 관련된 기업체를 대상으로 취업제한의 범위를 정하는 한에 있어서 재벌총수일가의 그룹

계열사 취업을 제한할 수 없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현행 특경가법의 취업제한 규정이 본인이 출자한 기업체 및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기업체에 대해 규율하지 못하는 점에 착안하여, 이에 대한 보완 규정이자 상법상 임원 자격의 일반규정으로서 다음과 같이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표 12〉 참조).

즉, 상장회사 특례규정에 상법·특경가법·자본시장법·도산법·외감법·조세범처벌법·금융실명법 등의 경제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자가, 일정 기간 동안 상장회사 및 상장회사와 그 특수관계인이 30% 이상 지분을 보유한 회사(비상장회사가 포함됨)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로 선임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만일, 해당 범죄에도 불구하고 이사, 집행임원 및 감사로 재직하는 경우 당연 무효사유가 된다.

〈표 12〉 상법상 이사의 결격사유 법률개정안(제안)

현행	개정안(제안)
〈신설〉	<p>제542조의4(이사, 집행임원, 감사의 결격사유) 이 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조세범처벌법」 또는 「금융실명법」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상장회사 및 상장회사와 그 특수관계인이 3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가 될 수 없다. 이사, 집행임원, 감사로 선임된 후에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職)을 잃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2.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 3. 징역형의 선고유예기간

물론 유죄가 선고된 자에 대한 임원제한 규정을 모든 회사에 적용할지 혹은 상장회사에 한하여 적용할지, 그리고 회사와 관련성이 높은 상법·자본시장법·특정가법·외감법 위반을 중심으로 결격사유를 정할지 아니면 모든 범죄를 대상으로 할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추후 국회에서 논의할 문제이지만, 법 위반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회사의 임원으로 재직할 수 없도록 강제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한편, 몇몇 형사판결 및 최근 개별임원에 대한 보수공시에 따라 총수일가가 등기임원직을 버리고 미등기임원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 상법상 임원을 등기된 이사와 감사에 한하고 있기 때문에²⁰⁾ 이렇게 미등기임원으로 전환한 총수일가 등에 대해 규제할 방법이 없다. 즉, 상법상 이사의 자격요건을 엄격히 규제하더라도 미등기임원으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사실상 이사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농후한데, 이를 규제할 제도적인 보완책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생각건대, 일정규모 이상의 회사에 대하여 집행임원제도의 도입을 의무화하고, 충실의무 위반 사안에 있어서 업무지시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형사재판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총수일가가 확정판결 직후 또는 특별사면 직후 곧바로 경영에 복귀하는 관행을 근절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2. 임원의 형사사건 관련 공시의 강화

(1) 주주총회 공시 강화

주주총회란 주주로 구성되어 있는 필요적 기구로 법률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을 결의하는 주식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서, 주주의 의사를 수렴하여 회사의 의사를 형성하는 기능을 한다.²¹⁾ 주주총회의 대표적인 권한은 재무제표의 승인, 이

20) 2011년 상법 개정으로 집행임원제도가 신설되었으나 실제 이를 도입한 회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21) 이철송, 회사법강의, 제20판, 박영사, p479~480.

사 및 감사의 선임 등이며, 이중 가장 중요한 것이 이사 및 감사의 선임이다.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이 특정 이사 후보에 대한 찬반의 의견을 표명하기 위해서는 해당 이사 후보가 지배주주 또는 경영진으로부터 얼마나 독립적인 인물인지, 그리고 이사의 역할을 수행하기에 전문성이 있는 인물인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정보가 공개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사전에 주주들이 이사 후보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적합한 이사의 선임을 어렵게 한다. 따라서 이사에 대한 충분한 정보 공개는 적격성을 갖춘 이사의 선임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현재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할 경우 이사 후보자에 대한 공시는 두 번 이루어진다. 첫 번째는 ‘주주총회 소집결의’이며 두 번째는 ‘주주총회 공고’를 통해서이다. 그런데, 현재 이루어지는 공고는 간단한 경력 및 현직 그리고 최종학력 등만을 기재하고 있고, 경력 또한 모든 경력을 기재하지 않을 뿐 아니라 현직도 모든 현직을 기재하지 않는 등 회사마다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확인된다.

〈표 13〉 이사 후보에 대한 공고 예시

[주주총회소집결의 - 이사후보에 대한 공시 사례]

성명	생년월일	임기	신규선임 여부	주요경력	현직	최종학력	국적
					전)00000 대표이사	00대학교 000학사	대한 민국

[주주총회 공고 - 이사후보에 대한 공시 사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후보자성명	주된 직업	약력	당해 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이처럼 현재의 형식적인 공시제도로는 (소액)주주들이 이사 후보자의 적격성 여부 등을 판단하기 어렵게 한다. 예를 들어, 과거 해당 회사 및 여타 회사에 대한 횡령·배임으로 실형을 받은 이사 후보가 있을 경우 해당 후보자가 회사의 이사로 선임된다면 주주가치에 반하는 의사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배구조의 위협요인이 되지만, 해당 내용이 공시되지 않는다면 적정한 의사결정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공시체제는 이러한 중요 정보를 반드시 공시하도록 강제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주주들에게 이사 후보자가 이사로서의 역할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을 것 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이사 후보에 대한 공시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시 개선의 방향은 이사 후보들에 대한 찬반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되, 이사 후보들이 필요하다면 자신의 적격성을 설명하도록 서술식으로 공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이사 후보에 대한 공시는 회사가 공시의 실무를 담당하되, 이사 후보자가 공시의 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하는 서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공시가 거짓일 경우 공시담당자 또는 회사가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해당 내용을 제공한 이사 후보가 책임지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²²⁾

결론적으로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적격성 (사외이사의 경우 독립성 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주요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며, 이중 과거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사항, 감독당국으로부터의 징계를 받은 사항 등에 대한 공시는 의무화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2) 수시공시 강화

최근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횡령·배임 문제가 보도되었을 당시 거래소에서는 CJ 및 CJ제일제당 등 CJ그룹의 상장계열사에 횡령·배임 관련 조회공시를 하지 않

22) 만약 공시사실이 허위일 경우 사외이사의 자격을 상실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도 검토되어야 한다.

았다. 이에 따라 경제개혁연대가 조회공시를 요청하였으나,²³⁾ 한국거래소는 조회공시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회공시를 하지 않았다. 현행 한국거래소의 공시규정에 의하면, 공시 및 조회공시를 요구하는 기준은 “자기자본의 100분의 5 (대규모법인²⁴⁾의 경우 1,000분의 25)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임·직원 등(퇴직한 자를 포함한다)의 횡령·배임 혐의가 확인된 때 및 그 혐의가 사실로 확인된 때” 가능하다.

한국거래소가 순자산을 기준으로 일정비율 이상의 횡령·배임의 경우 공시하도록 한 것은 단순히 회사의 재무상태에 미치는 중요성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회사의 규모가 큰 경우 공시대상 금액이 비례적으로 커지므로 상당히 큰 금액의 횡령·배임이 있는 경우도 공시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표14〉 참조).

〈표 14〉 2013년 말 자기자본 상위 10개사의 자기자본 및 공시기준액

(단위: 천원)

	회사명	자산총계	공시기준액*
1	삼성생명	191,003,407,000	4,775,085,175
2	삼성전자	154,825,957,000	3,870,648,925
3	한국전력공사	98,249,927,000	2,456,248,175
4	한화생명	82,053,924,615	2,051,348,115
5	현대자동차	57,714,177,000	1,442,854,425
6	포스코	54,242,277,654	1,356,056,941
7	삼성화재해상보험	48,785,768,876	1,219,644,222
8	한국가스공사	42,271,827,597	1,056,795,690
9	현대중공업	32,131,726,148	803,293,154
10	우리투자증권	29,480,147,000	737,003,675

* 자기자본의 1,000분의 25

23) 경제개혁연대(2013.5.27.), 논평 “경제개혁연대, 한국거래소에 이재현 회장 비자금 의혹 관련 CJ계열사 조회공시 요구” 참조.

24) 유가증권공시규정 제2조(정의)

⑬ “대규모법인”이라 함은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횡령·배임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중요한 사건으로 볼 수 있다. 즉, 해당 경영진 등의 횡령·배임 행위는 단순히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회사의 내부통제장치의 부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회사 경영진의 횡령·배임의 혐의가 문제된 경우 수사공시를 통해 시장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에 해당 공시가 자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금액기준을 대폭 하향조정하거나 횡령·배임이 발생하거나 이에 대한 보도가 이루어진 경우 모두 공시하도록 수사공시 규정을 개선하는 것이 검토되어야 한다.

별첨

주요그룹 총수일가 및 전문경영인의
형사재판 결과와 임원변동 현황²⁵⁾

삼성그룹 / 이건희 (총수)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삼성전자 대표이사	-	-	-	-	-	-
최종선고 (2009.8.14)		징역3년, 집행유예5년				
*2009.12.31.사면						

삼성그룹 / 김인주 (전문경영인)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삼성선물 대표이사	삼성선물 대표이사	삼성선물 대표이사
최종선고 (2009.8.14)		징역3년, 집행유예5년			
		*2010.8.15. 사면			

삼성그룹 / 박주원 (전문경영인)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삼성증공업 사내이사	삼성증공업 사내이사	-	-
최종선고 (2009.8.14)		징역3년, 집행유예4년			
		*2010.8.15. 사면			

25) 짙은 음영은 형집행 또는 집행유예 기간, 옅은 음영은 사면 받은 형 집행 또는 집행유예 기간을 각각 의미함.

현대차그룹 / 정몽구 (총수)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현대차 대표이사	현대차 대표이사	현대차 대표이사	현대차 대표이사	현대차 대표이사	현대차 대표이사	현대차 대표이사
기아차 대표이사	-	-	-	-	-	-
현대제철 이사	현대제철 이사	현대제철 이사	현대제철 이사	현대제철 이사	현대제철 이사	-
현대모비스 대표이사	현대모비스 대표이사	현대모비스 대표이사	현대모비스 대표이사	현대모비스 대표이사	현대모비스 대표이사	현대모비스 대표이사
현대파워텍 이사	현대파워텍 이사	현대파워텍 이사	현대파워텍 이사	현대파워텍 이사	현대파워텍 이사	현대파워텍 이사
			현대엔지비 기타 비상무이사	현대엔지비 기타 비상무이사	현대엔지비 기타 비상무이사	현대엔지비 기타 비상무이사
				현대건설 기타 비상무이사	현대건설 기타 비상무이사	현대건설 기타 비상무이사

최종선고
(2008.6.3) 징역3년, 집행유예5년
*2008.8.15사면

현대차그룹 / 김동진 (전문경영인)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현대차 대표이사	-	-	-	-	-	-
현대파워텍 이사	현대파워텍 이사	-	-	-	-	-
	현대모비스 대표이사	-	-	-	-	-

최종선고
(2008.6.3) 징역3년, 집행유예5년
*2008.8.15사면

현대차그룹 / 이정대 (전문경영인)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글로벌 이사	글로벌 이사	글로벌 이사	글로벌 이사	글로벌 이사	글로벌 기타 비상무이사	-
오토에버 시스템즈 감사	오토에버 시스템즈 감사	오토에버 시스템즈 감사	오토에버 시스템즈 감사	오토에버 시스템즈 감사	오토에버 시스템즈 감사	-
위아 감사	위아 감사	위아 감사	위아 감사	위아 감사	-	-
해비치리조트 감사	해비치리조트 감사	해비치리조트 감사	해비치리조트 감사	해비치호텔 앤드리조트 감사	해비치호텔 앤드리조트 감사	-
	현대로템 이사	-	-	-	-	-
			현대차 대표이사	-	-	-
					현대건설 기타 비상무이사	-
최종선고 (2007.2.5) 징역2년6월, 집행유예5년 *2008.8.15 사면						

SK그룹 / 최태원 (총수)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SK(주) 대표이사	SK(주) 대표이사	SK(주) 대표이사	SK(주) 대표이사	SK(주) 대표이사	SK(주) 대표이사	-
SK C&C 이사	SK C&C 이사	SK C&C 이사	SK C&C 이사	SK C&C 이사	SK C&C 이사	-
SK에너지 대표이사	SK에너지 대표이사	SK에너지 대표이사	SK이노베이션 대표이사	SK이노베이션 대표이사	SK이노베이션 대표이사	-
				SK하이닉스 대표이사	SK하이닉스 대표이사	-
최종선고1 (2008.5.29) 징역3년, 집행유예5년 *2008.8.15.사면						최종선고2* (2014.2.27)

* 최종선고2 : 최태원은 2014.2.27. 징역4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현재 형 집행 중임.

SK그룹 / 김창근 (전문경영인)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SK케미칼 대표이사	SK케미칼 대표이사	SK케미칼 대표이사	SK케미칼 대표이사	SK케미칼 대표이사	-	-
					SK이노베이션 사내이사	SK이노베이션 사내이사
						SK건설 기타 비상무이사
최종선고 (2008.5.29) 징역2년, 집행유예3년 *2008.8.15.사면						

SK그룹 / 문덕규 (전문경영인)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영남에너지 서비스 대표이사	영남에너지 서비스 이사	영남에너지 서비스 기타 비상무이사	영남에너지 서비스 기타 비상무이사	-	-
		SK E&S 대표이사	SK E&S 대표이사	SK E&S 대표이사	-	-
		부산도시가스 이사	부산도시가스 기타 비상무이사	부산도시가스 기타 비상무이사	-	-
		강원도시가스 이사	강원도시가스 기타 비상무이사	강원도시가스 기타 비상무이사	-	-
		대한도시가스 이사	대한도시가스 사외이사	코원에너지서비 스 기타 비상무이사	-	-
		전남도시가스 이사	전남도시가스 기타 비상무이사	전남도시가스 기타 비상무이사	-	-
		전북에너지서비 스 이사	전북에너지서비 스 기타 비상무이사	전북에너지서비 스 기타 비상무이사	-	-
		충청에너지 서비스 이사	충청에너지 서비스 기타 비상무이사	충청에너지 서비스 기타 비상무이사	-	-
			충남도시가스 이사	충남도시가스 기타 비상무이사	-	-
					SK네트웍스 대표이사	SK네트웍스 대표이사
최종선고 (2008.5.29) 징역2년, 집행유예3년 *2008.8.15.사면						

한화그룹 / 김승연 (총수)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주)한화 대표이사	-	(주)한화 대표이사	(주)한화 대표이사	(주)한화 대표이사	(주)한화 대표이사	(주)한화 대표이사	-
한화테크엠 대표이사	-	한화테크엠 대표이사	한화테크엠 대표이사	한화테크엠 대표이사	한화테크엠 대표이사	한화테크엠 대표이사	-
한화갤러리아 대표이사	한화갤러리아 대표이사	한화갤러리아 대표이사	한화갤러리아 대표이사	한화갤러리아 대표이사	한화갤러리아 대표이사	한화갤러리아 대표이사	-
한화건설 대표이사	-	한화건설 대표이사	한화건설 대표이사	한화건설 대표이사	한화건설 대표이사	한화건설 대표이사	-
한화종합화학 대표이사	-	한화엘앤씨 대표이사	한화엘앤씨 대표이사	한화엘앤씨 대표이사	한화엘앤씨 대표이사	한화엘앤씨 대표이사	-
한화이글스 이사	한화이글스 이사	한화이글스 이사	한화이글스 이사	한화이글스 사외이사	한화이글스 사내이사	한화이글스 사내이사	-
드림파마 대표이사	드림파마 대표이사	-	-	-	-	-	-
		한화석유화학 대표이사	한화케미칼 대표이사	한화케미칼 대표이사	한화케미칼 대표이사	한화케미칼 대표이사	-
최종선고1 (2007.9.11)	징역3년, 집행유예5년 *2008.8.15. 사면						최종선고2* (2014.2.11)

* 최종선고2 : 김승연은 2014.2.11. 징역3년, 집행유예5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중임.

두산그룹 박용만 (총수)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두산인프라코어 대표이사	두산인프라코어 대표이사	두산인프라코어 대표이사	두산인프라코어 사내이사	두산인프라코어 사내이사	두산인프라코어 사내이사
두산중공업 사내이사	두산중공업 사내이사	두산중공업 사내이사	두산중공업 사내이사	두산중공업 사내이사	두산중공업 사내이사
	두산 이사	두산 이사	두산 대표이사	두산 대표이사	두산 대표이사
		오리콤 사내이사	오리콤 사내이사	오리콤 사내이사	오리콤 사내이사
			두산건설 이사	두산건설 이사	두산건설 이사
최종선고 (2006.7.21)	징역3년, 집행유예4년 *2007.2.12. 사면				

두산그룹 박용성 (총수일가)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두산중공업 사내이사	두산중공업 사내이사	두산중공업 사내이사	두산중공업 사내이사	두산중공업 사내이사	두산중공업 사내이사	두산중공업 사내이사
두산인프라코어 이사	두산인프라코어 이사	두산인프라코어 이사	-	-	-	-
			두산 사내이사	두산 이사	두산 사내이사	두산 사내이사
최종선고 (2006.7.21)	징역3년, 집행유예5년 *2007.2.12. 사면					

두산그룹 이재경 (전문경영인)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네오플라스 감사	-	-	-	-	-
				두산 대표이사	두산 대표이사
				두산건설 사내이사	두산건설 사내이사
				두산인프라코어 사내이사	두산인프라코어 사내이사
				두산중공업 사내이사	두산중공업 사내이사
최종선고 (2006.2.8)	징역2년6월, 집행유예4년				

동부그룹 김준기(총수)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동부제철 대표이사	동부제철 대표이사	동부제철 대표이사	동부제철 대표이사	동부제철 대표이사	동부제철 대표이사
동부씨엔아이 대표이사	동부씨엔아이 대표이사	-	-	-	-
	동부메탈 대표이사	동부메탈 대표이사	동부메탈 대표이사	동부메탈 대표이사	동부메탈 대표이사
	동부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	동부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	동부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	동부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	동부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
					동부대우전자 대표이사
최종선고 (2009.10.29)	징역3년, 집행유예4년 *2010.8.15. 사면				

부영그룹 이종근(총수)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부영 대표이사	기업집단제외 (확인 불가)	부영 대표이사	부영 대표이사	부영 대표이사	부영 대표이사	부영 대표이사
부영대부 파이낸스 이사		부영대부 파이낸스 이사	부영대부 파이낸스 사내이사	부영대부 파이낸스 사내이사	부영대부 파이낸스 사내이사	부영대부 파이낸스 사내이사
		동광주택 대표이사	동광주택 대표이사	동광주택 대표이사	동광주택 대표이사	동광주택 대표이사
		부영주택 대표이사	부영주택 대표이사	부영주택 대표이사	부영주택 대표이사	부영주택 대표이사
		대화도시가스 이사	대화도시가스 사내이사	대화도시가스 사내이사	대화도시가스 사내이사	대화도시가스 사내이사
				광영토건 대표이사	광영토건 대표이사	광영토건 대표이사
				남양개발 대표이사	남양개발 대표이사	남양개발 대표이사
				무주덕유산 리조트 대표이사	무주덕유산 리조트 사내이사	무주덕유산 리조트 사내이사
				남광토건 대표이사	남광토건 대표이사	남광토건 대표이사
최종선고 (2008.6.27) *2008.8.15,사면	징역3년, 집행유예5년					

OCI그룹 이우현(총수일가)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OCI 사내이사	OCI 사내이사	OCI 사내이사	OCI 대표이사
		OCI스페셜티 기타 대표이사	-
		오덱 기타 대표이사	-
최종선고 (2011.4.8)	징역1년6월, 집행유예2년		

효성그룹 조현준(총수일가)

2012년	2013년	2014년
효성 사내이사	효성 사내이사	효성 사내이사
효성아이티엑스 사내이사	-	효성아이티엑스 사내이사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 사내이사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 사내이사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 사내이사
효성캐피탈 사내이사	-	-
효성투자개발 사내이사	효성투자개발 사내이사	효성투자개발 사내이사
효성트랜스월드 사내이사	효성트랜스월드 사내이사	효성트랜스월드 사내이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 기타비상무이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 기타비상무이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 기타비상무이사
갤럭시아코퍼레이션 대표이사	갤럭시아코퍼레이션 대표이사	갤럭시아코퍼레이션 대표이사
갤럭시아포토닉스 사내이사	갤럭시아포토닉스 사내이사	-
노틸러스효성 감사	노틸러스효성 감사	노틸러스효성 감사
더클레스효성 감사	-	-
아시아엘엔지허브 사내이사	아시아엘엔지허브 사내이사	아시아엘엔지허브 사내이사

최종선고
(2012.9.13)

징역1년6월, 집행유예2년